

「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9월1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7년 9월 11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30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17년 9월 11일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 정성문)

### 가. 제안이유

- 보건의료원 기구개편 및 동계올림픽 대비 인력 재배치 등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정원조정 내역(재배치)

현정원	증감	조정후
642	+11	653

- ▶ 동계올림픽 대비 교통부서 인력 증원
- ▶ 동계올림픽 3개부서 업무 분석에 따른 인력재배치
- ▶ 감염병관리담당 신설에 따른 전담 인력 증원
- ▶ 맞춤형복지담당 신설에 따른 복지인력 증원
- ▶ 가축방역 업무량 증가에 따른 수의직 증원

- ▶ 대관령도서관 개관에 따른 인력 증원
- ▶ 동계올림픽 대비 인허가 업무 과중에 따른 인력 증원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용호)

- 본 조례안은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보건의료원 기구개편 및 동계올림픽 대비 인력 재배치 등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정원의 총수는 현정원 642명에서 11명이 증가한 653명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,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**【붙임】**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##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642명”을 “653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630명”을 “641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**평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**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회사무과	직속기관	사업소	읍·면
총 계	653	653				
정무직 계	1	1				
군 수	1	1				
일반직 계	631	631				
4급	2	1		1		
4~5급	2	2				
5급	27	12	2	4	1	8
6급 이하	599	599				
전문경력관 소계	1	1				
연구직 계	2	2				
연구관						
연구사	2	2				
지도직 계	19	19				
지도관	1			1		
지도사	18	18				